

총학생회 회칙

□ 제정 : 1985. 09. 14

□ 개정 : 1988. 11. 01

□ 개정 : 2011. 01. 0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수원대학교 총학생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들의 민주적 자율적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연구와 인격도야가 목적인 대학에서의 학생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제반활동을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로한다.(단,휴학 중 기간은 자격이 상실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⑤ 본회의 회원은 자유롭게 의사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구) 본회는 학생총회,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집행부, 각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로 구성한다.

제6조(특별기구) ① 총학생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특별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그 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학생활동 건의) 학생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장이나 학생처장에 건의,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본회는 본회의 운영과 학생자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교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2장 학생총회

제9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구이다.

제10조(구성) 학생총회는 재학중인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권한)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12조(소집) 학생총회는 학기중 총학생회장이나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소집한다.

제13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단,총학생회장 유고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중앙운영위원중 의장을 선임한다.)

제14조(의결) 학생총회의 의결은 전체 회원의 5분의 1인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비상학생총회) ① 비상 학생총회 소집은 총학생회장, 중앙운영위원회의 과반수 발의, 회원 10분의 1인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② 비상 학생총회의 의결은 전체회원 5분의 1인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6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의결기구이다

제17조(구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총여학생회장,인문대학학생회장,법정대학학생회장,경상대학학생회장,자연과학대학학생회장,공과대학학생회장,IT대학학생회장,생활과학대학학생회장,음악대학학생회장,미술대학학생회장,체육대학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기타 학생회 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제18조(의장) ①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임 할 수 있다.

②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간으로 연임 할 수 없다.

③ 중앙운영위원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책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19조(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 운영 심의
2. 학생회칙 개정
3. 학생총회 소집 요구
4. 사업예산 심의
5. 총학생회장 탄핵 요구
6. 학생회비 예산 의결
7. 집행부 및 확대운영위원회 임면
8. 중앙운영위원장의 임면
9. 중앙운영위원 임면 제청
10. 학생행사에 수반되는 예산 의결
11. 학생회 사업에 대한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0조(소집) ① 중앙운영위원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학기 개시 후 월 1회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의장이 소집한다.(단, 긴급시 의장이 소집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 총회 소집은 2일 전에 공고한다.

제21조(의사, 의결, 정족수)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의제는 위원 3인 이상으로 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8조 제9호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제18조 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22조(총학생회장)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활동을 총괄 관장한다.(단, 경우에 따라 부총학생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부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제24조(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간으로 연임 할 수 없다.

제25조(인수인계) 총학생회장은 당선공고일로부터 위 제23조 임기전 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어진 임무에 성실을 다하여야한다.

제26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책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집행부 임원의 임명 및 해임권
2.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4.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회의 회칙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학생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회칙을 공포한다.
6. 선거기간중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임명한다.
7. 학생자치활동 및 복지에 관계되는 학사행정에 관하여 총장 및 학생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총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시행 및 운영을 총괄한다. .
9. 중앙운영위원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시행 및 운영을 총괄한다.
10.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1. 그 외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부총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 주무의 역할을 한다.
2.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집행부 임원 임명 및 해임을 요구한다.

제5장 확대운영위원회

제28조(지위)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심의기구이다.

제29조(구성) 확대운영위원회는 부총학생회장, 총학회집행부 국장, 단과대학 부학생회장, 동아리부회장, 총여학생회부회장 으로 구성한다

제30조(의장) 부총학생회장은 확대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확대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확대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산하기구로 총학생회 제반사업을 심의한다.
2. 학생회의 예산 및 집행등을 심의한다.
3. 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 상정한다.

4. 과반수 발의로 중앙운영위원회 총회를 소집요구할 수 있다.
 5.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학생회 제반 운영 사항을 의결, 심의한다.
 6. 중앙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7. 확대운영위원회는 각 자치기구 및 집행부의 활동을 보고, 평가, 심의한다.
- 제32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 정기회의는 학기중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 제33조(의결)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4조(자문) 확대운영위원회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단을 구성 할 수 있다.

제6장 집행부

- 제35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 제36조(구성)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국장 및 각 차장으로 구성한다. 각 국장, 차장은 4학기를 필한 자로 한다.
- 제37조(조직 및 업무) ① 집행부의 조직은 8국장·8차장이하로 구성한다
 ② 각 국장은 확대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총학생회장의 지시를 받아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의 전체 사업 중 해당사업을 집행한다.
 ⑤ 기타 사항은 총학생회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7장 단과대학 학생회

- 제38조(지위)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대학의 최고학생기구이다.
- 제39조(구성)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대학의 학생 전체의 참여로 구성한다.
- 제40조(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41조(업무 및 권한)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대학의 자치활동을 총학생회의 방향성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 제42조(회칙) 단과대학 학생회칙은 총학생회 회칙에 준하여 정하되, 필히 총학생회 회칙 시행세칙 제1조, 제2조는 필히 따라야 한다. 각 단과대학학생회장은 학기초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회칙을 공지한다.

제8장 총여학생회

- 제43조(구성) 총여학생회는 본교 여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 제44조(회장) 총여학생회장은 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제45조(업무 및 권한) 여학생회는 여학생회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학생회의 방향성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 제46조(회칙) 총여학생회의 학생회칙은 총학생회 회칙에 준하여 정하되, 필히 총학생회 회칙 시행세칙 제1조,

제2조는 필히 따라야 한다. 각 단과대학학생회장은 학기초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회칙을 공지한다.

제9장 동아리연합회

제47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에 정식 등록된 본교의 모든 동아리로 구성한다.

제48조(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전체 동아리를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49조(업무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학생회의 방향성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50조(회칙) 동아리연합회의 학생회칙은 총학생회 회칙에 준하여 정하되, 필히 총학생회 회칙 시행세칙 제1조, 제2조는 필히 따라야 한다. 각 단과대학학생회장은 학기초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회칙을 공지한다.

제10장 재 정

제51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집행한다.

제52조(회계연도) 본회의 예산은 매년 1학기 및 2학기로 구분하여 집행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53조(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본회의 회비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총학생회 회비 관리는 학교에서 하되 그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행한다.

④ 회비는 본회의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4조(예산) ① 본회의 예산은 각 기구별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예산의 의결은 중앙운영위원 전원의 만장합의에 의하며 매학기 4분의 2학기 경과전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산안이 기일 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5조(예비비) 예비비는 총 예산의 5% 이내로 하고 지출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6조(결산) 총학생회는 매학기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학생총회 또는 전체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보고, 심사를 받는다. 각 기구별 학생회도 이에 준해야한다.

제11장 선거

제57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로 한다.

제58조(선거권) 본 교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59조(선거시기 및 방법) ① 총학생회장 및 각 기구별 학생회장 선거는 당해 학기 종료전까지 실시 한다.

②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의 세부절차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0조(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본 회원 전체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2인 1조가 되어 선

거의 전과정에 한조로써 참여하고 재학생 회원 전원의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제61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과 확대운영위원회 위원중 필요인원으로 구성
하되 총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62조(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여기간이 15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총학생회장이 탄핵을 받아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선에 의해 그 직을 계승하며
집행부의 구성은 총학생회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63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2장 회칙개정

제64조(발의) 본 회의 회칙개정은 확대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 발의가 있어야 한다
제65조(의결) 본 회칙 개정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2의 출석과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공포, 효력발생)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공동명의로 공포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1985.9.14)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